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
----------	------

발의연월일 : 2018. 9.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하중환 의원

1. 제안이유

관내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

2. 주요내용

- 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마련
- 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 등을 명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조사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 필요 사항의 점검과 개선사항의 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노 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		☐ 소방 ☐ 기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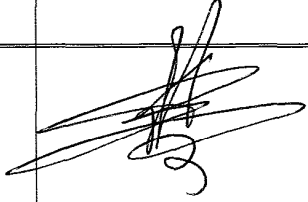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명	서 명	날 인
구 자 학	구 자 학	
하 중 환	하 중 환	